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 -115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113호(2015.12.28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중구고시 제2018-24호(2018.3.16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중구 입정동 189-1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2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고 시
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89-1번지 일원 / 4,661.20㎡
4. 사업시행자 :
 - 성명 : 더센터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권수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7(역삼동, 한신인터밸리24)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10월 26 일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등 건축계획

(단위 : ㎡)

구 분	대지면적	동수	층 수	세대수	연면적
공동주택	3,323.58	1	지하8층~ 지상26층	390	48,774.05
근생/판매	320.42			-	4,701.46
소계	3,644.00	1		390	53,475.51

2) 토지이용계획

(단위 : ㎡)

총 계 (㎡)	택 지	정비기반시설				
	공동주택 및 근생/판매	소 계	도 로			
4,661.2	3,644.0	1,017.2	1,017.2			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상가 면적 (㎡)
	계	45㎡	48㎡	49㎡		59㎡				
		A	A	A	B	A	B	C	D	
계	390	48	48	96	48	96	24	24	6	4,701.46
일반분양	352	48	48	96	10	96	24	24	6	
임대주택	38				38					

라. 신설 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

(단위 : ㎡)

신 설					용도폐지		
종류	명칭	규모	설치비용	관리청	종류	명칭	규모
도 로	중(집)3-	344.5	17,416,645,828	중구청	도로		560.6
도 로	중(국)3-1	672.7		중구청			
계		1,017.2	17,416,645,828				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

-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

※ 위 철거 예정시기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7.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(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☎3396-5753). 끝.